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화 : 2094-04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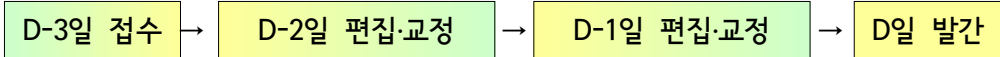
제1648호 2010. 6. 4

공 고

제2010-38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38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해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해 구민제안을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 발굴 및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 가. “지정제안“ 용어를 “공모제안“으로 변경(안 제3조제2호)
- 나. 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선정으로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 다.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9조)
- 라. 공모제안의 채택관련해 공모제안의 불채택 제안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공모제안의 채택등급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안 제16조의1)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기획홍보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편번호 131-701, 전화 : 2094-0533, FAX : 2094-0479. E-mail: songjh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기획홍보과(☎ 2094-0533)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